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 2014. 2. 26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이진표 ]**

## 1. 안 건 명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4년 2월 19일

나. 의안번호 : 14-11

## 4. 관련근거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(표창)

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”

## 5. 개정이유

구민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,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표창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.

## 6. 주요 내용

6개 부분의 구민상 중 ‘용감한구민상’과 ‘모범청소년상’은 폐지하고 ‘체육상’과 ‘지역발전상’을 신설하며 ‘효행상’은 ‘효행·선행상’으로 변경하고자 함

현 행	개 정 안
용감한 구민상	체육상
효행상	효행·선행상
모범청소년상	지역발전상

### [ 검토결과 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」 제9조(구민상)에 의거 마포 구민 또는 관내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아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 총 6개 부분의 구민상을 수여하여 왔으나,
- 해당분야의 구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,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위해 “용감한 구민상”을 “체육상”으로, “효행상”을 “효행·선행상”으로, “모범청소년상”을 “지역발전상”으로 일부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- 검토 결과 “용감한 구민상”은 그간 총 22회 중 13회만 시상하여 수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의로운 사회구현 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하고, “효행상”을 “효행·선행상”으로 변경하는 경우 효행은 물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도 시상이 가능하므로,
- 현행 6개 부문(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)중 “효행상”을 “효행·선행상”으로 명칭변경하고 “모범청소년상”은 폐지하며, “체육상”과 “지역발전상”을 신설하여 구민상을 7개 부문(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체육상, 지역발전상)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됨.

《 수정안 》

현행 (6개 부문)	개정안(6개 부문)	수정안 (7개 부문)
문화상	문화상	문화상
용감한구민상	체육상	용감한구민상
장한어버이상	장한어버이상	장한어버이상
봉사상	봉사상	봉사상
효행상	효행·선행상	효행·선행상
모범청소년상	지역발전상	지역발전상
		체육상

# 관 계 법 령

## [ 지방공무원법 ]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## [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]

제9조(구민상)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상, 봉사상,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으로 한다.

③ 구민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